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26호 2015. 10. 26.(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5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6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6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6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6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405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439호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공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446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27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1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4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4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36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5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0.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검단로511번길 13외 1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0. 16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10-1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28-2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11번길 13 (마전동, 우림빌)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97-9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68번길 18 (불로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63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 13 (경서동)	2013-07-30	보석을 이용한 경관구조계획 개념에서 착안	
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48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길 10 (경서동)	2013-07-30	보석로 시작지점부터 약 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49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길 12 (경서동)	2013-07-30	보석로 시작지점부터 약 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8-12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20번길 89 (원창동)	2009-09-22	북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413, 412-3	인천광역시 서구 설원로 121 (대곡동)	2013-07-30	자연부락 명칭 반영	
8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447-10	인천광역시 서구 설원로138번안길 17 (대곡동)	2013-07-30	설원로13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447-12	인천광역시 서구 설원로138번안길 21 (대곡동)	2013-07-30	설원로13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07-6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61 (검암동)	2009-09-22	싱아풀이 많아 싱아고개로 불렸던 승학고개의 이름을 따 명명	
11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34-7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34번길 25 (검암동)	2009-09-22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98번안길 30 (가정동)	2015-01-30	염곡로49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76-104	인천광역시 서구 옥빛로13번길 2 (경서동)	2013-07-30	옥빛로 시작지점부터 약 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72-2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1로 7 (오류동)	2012-10-25	우리구 해넘이 명소 정서진 명칭을 반영한 정서진로에서 분기되는 첫번째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99-15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594 (연희동, 비전프라자)	2009-07-06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헌선생의 호를 따서 제명	
1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67-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42번길 6-15 (경서동)	2012-03-30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39-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사파이어로 226 (경서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경관특성화 계획에 의거 사파이어 존에서 착안	
18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67-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49번길 17 (연희동)	2012-03-30	청라에메랄드로의 시작점에서 1,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16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 10.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설원로 121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대곡동 413, 412-3	설원로 121	2015.10.06.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6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0.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건지로 98-93외 1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0. 23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10-23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479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98-93 (가좌동)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478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98-97 (가좌동)	2009-09-22	이 도로의 종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3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758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09번길 36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757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09번길 36-1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279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09번길 38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56-34, 556-40, 556-4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294-21 (왕길동)	2009-07-10	검데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63-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18번길 7-10 (경서동)	2009-09-22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26-11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2로 15 (오류동)	2012-10-25	도담로에서 두번째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58-8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42번길 31-3 (경서동, 두호동)	2009-09-22	도요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43-14	인천광역시 서구 마중로 159 (오류동)	2012-10-25	"나가서 맞이한다" 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11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73, 172-20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394번길 41-16 (왕길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94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2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501번길 58-34 (원창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55-14, 21-37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501번길 58-36 (원창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75-4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17번길 9 (왕길동)	2008-12-31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25-17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228번길 12-3 (금곡동)	2008-12-31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05번길 2-63 (오류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67-2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4번길 16-8 (경서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67-4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4번길 24-6 (경서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16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 10.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백범로 699외 11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도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5-10-23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41-4	백범로 699	2015.09.30	건물 멸실	
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496-31	신석로122번길 7-1	2015.10.01	건물 멸실	
3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496-26	신석로122번길 7	2015.10.01	건물 멸실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431	검단로188번길 5-11	2015.10.12	건물 멸실	
5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7-7	신석로112번길 8	2015.09.18	건물 멸실	
6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75-4	완정로117번길 11	2015.09.17	건물 멸실	
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63-1	경서로18번길 7-12	2015.10.16	건물 멸실	
8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99-122	새오개로 27-8	2015.10.16	건물 멸실	
9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99-121	새오개로 27-6	2015.10.16	건물 멸실	
1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99-120	새오개로 27-4	2015.10.16	건물 멸실	
11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73	봉수대로1394번길 41	2015.10.15	건물 멸실	
12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75-4	완정로117번길 9	2015.10.15	건물 멸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405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제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5. 10.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위 치	대 지 면 적 (㎡)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위 치	대 지 면 적 (㎡)	비 고
A-1	12-1	7	548.0	2필지 분할가능	A-1	12-1	7	548.0	2필지 분할가능
소계			548		소계			548	

※ 참고 : 대지분할가능선(분할가능 대지면적) 변경은 지형도면 참조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5772)

인천광역시 서구 제2015 - 1439호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공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시행하는 「석남완충녹지(3단계) 조성사업(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같은 법」 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고, 소유자의 사망으로 통지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사망 말소자 소유토지의 상속인)와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석남완충녹지(3단계) 조성사업(1차)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90-6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4. 열 램 내 용 : 수용재결 신청 관계서류
5.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서구청 공원녹지과(공원조성팀)
6.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5.10.20. ~ 2015.11.03.(15일간)
7.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사업구간 편입 토지내역					비고
		동명	지번	지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故안역만의 상속인	인천 서구 석남동 445-1 (8/4)	신현동	190-6	도로	8	8	소유자 안역만 사망말소 (반송:주소불명)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공원조성팀, 032-560-44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446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27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113호(2015.08.0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7호선, 사업명:염곡로(중로 1-27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0. 2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0-15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1-27호선)
 - 명칭 : 염곡로(중로 1-27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B=20~25m, L=215m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중로	1	27	20~25	보조 간선	4,565	광로 29	대로 229	일반 도로	1966. 11	
금회 시행	중로	1	27	20~25	보조 간선	215	광로 29	대로 229	일반 도로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6. 9.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불임과 같음

7.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도시개발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용 지 조 서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계		53필지		86,375.3	9,530.0						
1	가정동	204-150	전	95	32	인천광역시서구					
2	가정동	204-142	전	227	5	인천광역시					
3	가정동	204-148	답	15	15	인천광역시서구					
4	가정동	204-138	전	73	51	인천광역시서구					
5	가정동	204-129	답	173	173	인천광역시서구					
6	가정동	204-114	도	58	58	인천광역시서구					
7	가정동	120-156	도	16,998	377	인천광역시					
8	가정동	120-39	도	59	59	인천광역시					
9	가정동	204-15	전	981	3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0	가정동	204-139	답	434	15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가정동	204-130	답	56	56	인천광역시서구					
12	가정동	204-115	도	4	4	인천광역시서구					
13	가정동	204-91	답	52	52	인천광역시서구					
14	가정동	204-156	도	866	866	인천광역시서구					
15	가정동	204-5	도	463	44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천지역본부)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6	가정동	204-9	답	78	78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7	가정동	204-6	답	1,718	9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8	가정동	204-126	답	110	110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9	가정동	204-124	답	146	146	인천광역시서구					
20	가정동	204-153	답	3	3	인천광역시서구					
21	가정동	204-74	답	696	59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2	가정동	204-131	답	285	284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3	가정동	204-127	답	18	13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4	가정동	204-112	답	1	1	인천광역시서구					
25	가정동	204-125	답	61	37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6	가정동	204-154	답	38	38	인천광역시서구					
27	가정동	204-110	답	4	4	인천광역시서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28	가정동	204-128	답	211	65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9	가정동	204-157	도	261	118	인천광역시서구					
30	가정동	204-160	도	549	440	인천광역시서구					
31	가정동	204-88	도	503	42	인천광역시					
32	가정동	572-1	도	34.7	15	인천광역시					
33	가정동	572	도	2,292.6	2135	인천광역시					
34	가정동	472	대	206.3	2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5	가정동	472-29	대	420	8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6	가정동	472-13	대	120.6	120.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7	가정동	472-12	대	631.1	58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8	가정동	472-11	대	263.5	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9	가정동	472-33	대	133.1	1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0	가정동	571	도	39,613.5	759	인천광역시					
41	가정동	204-111	도	183	183	인천광역시서구					
42	가정동	476	주	621.8	32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3	가정동	476-8	대	575.1	31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4	가정동	204-86	답	47	47	인천광역시서구					
45	가정동	476-9	대	165.3	8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6	가정동	476-7	대	326.4	16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7	가정동	476-18	대	165.4	165.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8	가정동	476-23	대	165.4	1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9	가정동	476-2	대	202.7	16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0	가정동	476-34	대	202.6	13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1	가정동	476-5	대	288.6	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2	가정동	476-4	대	376.6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3	가정동	574-1	도	14,104	3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4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우리 구 현행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 규제개선과제 이행을 통하여, 지하수 관리행정에 대한 대민 신뢰 구축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부 조문 정비 및 본조 신설
 - 안 제11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경리관⇒재무관, 분임경리관⇒분임재무관
 - 안 제13조(세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호부터 제10호까지
 - 안 제17조(가산금)
100분의 5⇒3퍼센트
 - 안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3항⇒「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8⇒「지하수법 시행령」 별표7

- 안 제22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30일 ⇒ 60일
 - 안 제25조(준용규정)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안 제7조 1~2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032-560-4533, FAX 032-560-2764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제안이유

- 우리 구 현행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 조례 규제개선 과제 이행을 통하여, 지하수 관리행정에 대한 대민 신뢰 구축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부 조문 정비 및 본조 신설
 - 안 제11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경리관⇒재무관, 분임경리관⇒분임재무관
 - 안 제13조(세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호부터 제10호까지
 - 안 제17조(가산금)
100분의 5⇒3퍼센트
 - 안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8⇒「지하수법 시행령」 별표7

- 안 제22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30일⇒60일
- 안 제25조(준용규정)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안 제7조 1~2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조 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하수개발·이용자”란 법 제7조(13조”를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3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5조”를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5조”로,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시설에 대하여는”을 “시설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영 제29조제1항”을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질규칙”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전시”를 “전시 및”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지하수관련”을 “지하수 관련”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를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7조의1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의2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제11조의2제1항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서 정하는 바에”를 “을”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제8호”를 “제10호”로 한다.

제14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제1호 중 “100%”를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를 “100퍼센트”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부과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7조 중 “100분의 5에”를 “3퍼센트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과징수에 관하여”를 “부과징수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하고 자 할 때에는”을 “할 때는”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제44조제3항”을 “제44조”로, “8의”를 “7의”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부과할 때는”으로, “또는 서면에 의하여”를 “또는 서면으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25조 중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을 “사항은 「지방세 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제2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시 행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법」 제○조제○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조에 따라 금○○○○○○○○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채 납 과 태 료 금 액	금 원 (₩)	당초납부기일		
<p>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p>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

시 행 :

수 신 :

발 신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하수법」 제41조와 관련입니다.

2.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이의제기 사유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2.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법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3. (생략)	제2조(정의)	----- -----.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칙 제5조 각 호 외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	

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2. (생략)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하면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수질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생략)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생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5조

-- 단서-----

----- 시설은 -----

-----.

1. 2. (현행과 같음)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

-----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29조제1항-----

-----.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

2. (현행과 같음)

3. 전시 및 -----

4.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3. (생략)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 7. (생략)

③ (생략)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⑥ (생략)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

--.

1. ~ 3. (현행과 같음)

4. ----- 지하수 관련 -----

5.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유로 -----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

제외한다.

⑧ -----

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 운영에 -----

-----.

제7조의1(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의2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
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 1.·2. (생략)
- 3. 경리관 : 총무국장
- 4. 분임경리관 : 건설과장
- 5. ~ 10. (생략)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
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
피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
 ----- 관계 공
무원-----
 -----.

제11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

 -----.

- 1.·2. (현행과 같음)
- 3. 재무관 -----
- 4. 분임재무관 -----
- 5. ~ 10. (현행과 같음)

② -----
 -----을-----
 -----.

제13조(세출) -----
 -----.

<p>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u>제8호</u>까지</p> <p>2. 3. (생략)</p>	<p>1. ----- - <u>제10호</u>----</p> <p>2. 3. (현행과 같음)</p>
<p>제14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u>운영</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p>	<p>제14조(사무취급 예) ----- ----- <u>운영</u> ----- -----.</p>
<p>제15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감면율 <u>100%</u></p> <p>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감면율 <u>100%</u></p> <p>3. (생략)</p> <p>③ (생략)</p>	<p>제15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 <u>100퍼센트</u></p> <p>2. ----- ----- <u>100퍼센트</u></p> <p>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의3(과오납금의 환급) ① 구 청장은 납부의무자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u>지체없이</u> 그 과오납금액을 지하수이용부담금환급금액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제15조의3(과오납금의 환급) ① --- ----- ----- ----- <u>지체 없이</u> ----- ----- -----.</p>

② (생략)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가산금)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
----- 부과할
때에는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가산금) -----

----- 3퍼센트에 -----
-----.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
----- 부과징수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

분을 하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 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21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제22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 할 때는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4조----- 7의 -----

-----.

제21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 부과할 때는 -----

----- 또는 서면으로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5조(준용규정)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60
일 -----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준용규정) -----

----- 사항
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

제26조(시행규칙) ----- 시행
에 -----
-----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지하수법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항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5.22.>

지방세기본법 제57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1.12.3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6.8.> [전문개정 2001.12.19.]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 - 14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목적의 현금성 급여 사업”에 해당하는 본 사업 중단 권고방침에 따라 관련 조례 폐지

2. 주요 내용

- 출산축하금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중복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며, 아울러 구민 50만 명 돌파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업 지속의 이유 소멸
- 입양축하금은 이미 국비(15만원)와 시비(20만원)로 월별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현금성 급여의 중복지원이며, 입양은 대부분 출산 초기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다음에 이루어지므로, 출산초기의 막대한 비용지원을 위한 성격으로서의 출산축하금과 비교하여 실효성이 부족

3. 의견 제출

-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여성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32-560-5735) 또는 Fax(032-560-274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지와 같이 폐지한다.

2. 폐지이유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목적의 현금성 급여 사업”에 해당하는 본 사업 중단 권고방침에 따라 관련 조례 폐지
 - ▶ ‘15.4.1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3. 주요내용

- 출산축하금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중복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며, 아울러 구민 50만 명 돌파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업 지속의 이유 소멸
- 입양축하금은 이미 국비(15만원)와 시비(20만원)로 월별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현금성 급여의 **중복지원**이며, 입양은 대부분 출산 초기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다음에 이루어지므로, 출산초기의 막대한 비용지원을 위한 성격으로서의 출산축하금과 비교하여 실효성이 부족

4. 참고사항

- 가. 폐 지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된 출산입양축하금은 명시이월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관계법령 발췌

□ 사회복지기본법 제20조제2항 제7호 및 제9호, 제4항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제3항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